

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. .
발 의 자	김재우 의원 외 10명

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
발 의 자 : 김재우 · 김낙관 · 김춘남 · 송용자
안장환 · 안주찬 · 윤종호 · 이선우
이지연 · 장세구 · 홍난이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지역사회에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2조)

나.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보조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봉사회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7조, 제8조,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1. 14. ~ 1. 20.) 결과 의견없음

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(이하 “봉사회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.

제3조(활동지원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
3.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
4.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
5.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한 사업
6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
제4조(지원신청 등)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,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표창)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

제7조(사업)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
2. 전시(戰時)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
3. 수재(水災), 화재, 기근(饑饉),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
4. 의료사업(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), 응급구호사업, 자원봉사사업, 이산가족 재회사업, 청소년적십자사업, 관련 교육사업,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
5.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
6.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)

- ① ~ ③. 생략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위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나 정확한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

4. 작성자

- 총무과 시정계 박성찬(480-6765)